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 포함 등 >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79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사회봉사 금지	2
2.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 포함 등	4
3.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는 자의 노무제공 중단 요구 등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Ⅲ. 검토의견

1.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사회봉사 금지

개정안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¹⁾에게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된 경우 현행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사회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 ⑨ (생략)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된 경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사회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현행법 제21조제4항²⁾에서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1) 개정안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오자로 보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④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사회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³⁾ 및 법무부 내부 지침인 「사회봉사집행지침」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사회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의 사회봉사 처분 수행 시 아동·청소년 관계기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관리하에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 사회봉사 처분의 취지, 관련 법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의 범위)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감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감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하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률과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 포함 등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유형 중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되, 자원봉사활동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 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 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 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 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 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u>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u>(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u>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 ③ ~ ⑨ (생략)	-----<u>사실상 노무를 제공</u>(「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u>----- -----. ----- ----- ----- ----- -----. 1. ~ 25. (현행과 같음) ② ----- <u>-10년(자원봉사활동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 ③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현행 제56조제5항4),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취업 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함(안 제57조)5).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으로 성범죄자에게 제한되는 취업 관련 행

-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 유형 중 “사실상 노무 제공”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6)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으로는 녹색어머니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어린이집 등에서의 실습활동 등이 있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기관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로서, 이러한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음.

실제로 2019년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수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해당 시설에 다니는 5~6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사례⁷⁾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경향신문, “보육시설 찾아온 성범죄자 ”자원봉사 왔어요“ 무사통과”, 2019.2.22.

<https://www.khan.co.kr/article/201902220600005>

관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그들과 그 보호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의 자원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자칫 대가가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자원봉사자 수가 2024년 기준 약 18만명이고, 일회성 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의 양태가 다양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⁸⁾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관련 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원봉사 참여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원봉사참여 성인 인구수	2,124,110	1,383,916	1,294,068	1,457,575	1,685,636	1,790,037

주 1.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1년간(연도별) 봉사활동을 1회 이상 참여한 성인 인구수(20세 이상)임.

주 2. 중복을 제거한 자원봉사 참여 수로 자원봉사 참여율 지표(통계청, 사회조사)와 차이가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 통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자원봉사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자원봉사 행위가 자격증 등의 취득에 필수적 요건사항에 해당하면 “사실상 노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⁹⁾하고 있어, 자원봉사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일부 달성되고 있는 부분도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에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 및 모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성범죄 경력 조회 조치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경찰청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모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경우 관련기관의 현실적인 부담 및 자원봉사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판단하에 봉사활동의 내용·양태·기간 등을 살펴 범죄조회 및 활동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024. 2, 48쪽.

경찰청은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인원은 연평균 약 218만명으로 경찰청에서 회보해야 하는 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령제·개정으로 범죄경력자료의 활용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담당 인력은 전국 기준 총 344명에 불과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취업제한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당사자의 중대한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제도로 이를 대가가 없는 자원봉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사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의 위축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는 자의
노무제공 중단 요구 등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노무제공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u>해임</u> 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 ----- ----- ----- ----- ----- ----- ----- ----- ----- ----- <u>해임 또는 노무제공의 중단</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제58조에 따른 <u>해임요구</u>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 ⑤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해임 또는 노무제공의 중단 요구</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해당 규정의 “해임”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정안처럼 법문에 “노무제공의 중단”을 명시하는 것이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법률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¹⁰⁾.

10) 참고로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유사 법률에서도 “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문 의 처

02)6788-5644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 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 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 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